

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2461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4. 3. 11.

제출자 : 달성군주



1. 제안이유

-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기부금 수입 변경 : 50,000천 원 증
 - (당초) 금50,000천 원 → (변경) 금100,000천 원
- 예치금 변경 : 17,014천 원 감
 - (당초) 금71,400천 원 → (변경) 금54,386천 원

3. 기금운용계획서(변경안) : 붙임 참조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(※붙임)
- 나.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붙임**기금운용계획서(변경안)****1. 운용 총칙**

회계연도 : 2024년
 예산차수 : 기금변경2차
 회계구분 : 고향사랑기금

① 기금설치 개요

- (1) 설치근거 :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
- (2) 설치목적 : 고향사랑기부제로 모금, 접수된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
- (3) 설치년도 : 2023년

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- (1) 기금사업의 목표 : 기부금 모금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기부자의 답례품 제공, 기부금 활용 사업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 도모
- (2) 2024년도 기금사업 개요 : 기부금 모금, 접수에 따른 답례품 제공, 기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운영을 위한 사업 등

③ 기금조성 및 운용

- (1) 기금조성 현황

○ 연도말 기금 조성액

(단위 : 천원)

2023년도 말 조성액 ㉑	2024년도 조성 계획		2024년도 말 조성액 ㉒ = ㉑ + ㉓	비 고
	수입 ㉔	지출 ㉕		
54,386	101,000	0	101,000	155,386

○ 기금 총 조성규모

(단위 : 천원)

2024년도 말 조성액 ㉑	용자금 미회수채권 ㉒	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㉓	총 조성규모 ㉔=㉑+㉒-㉓
155,386	0	0	155,386

(2) 재원조성 :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으로 조성

(3) 지원기준 :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

(4) 지원대상 :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주민복지증진 사업추진 지원

2. 자금운용계획

회계연도 : 2024년
 예산차수 : 기금변경2차
 회계구분 : 고향사랑기금

① 자금수지 총괄

(단위:천원)

항 목		수 입			계			지			출			계			획		
		수입액	기정액	증감	항 목	지	출액	기정액	증감	항 목	지	출액	기정액	증감	항 목	지	출액	기정액	증감
합	계	155,386	122,400	32,986	합	계	155,386	122,400	32,986	합	계	155,386	122,400	32,986	합	계	155,386	122,400	32,986
전	입	0	0	0	비	용	자	성	사	임	비	0	0	0	0	0	0	0	0
보	조	0	0	0	용	자	성	사	임	비	0	0	0	0	0	0	0	0	0
차	입	0	0	0	인	력	문	영	비	0	0	0	0	0	0	0	0	0	0
용	자	금	회	수	기	본	경	비	0	0	0	0	0	0	0	0	0	0	0
(이	자	포	함)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
예	탁	금	원	금	회	수	0	0	0	0	0	0	0	0	0	0	0	0	0
예	치	금	회	수	54,386	71,400	△17,014	예	치	금	155,386	122,400	32,986	예	치	금	155,386	122,400	32,986
예	수	수	금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
이	자	수	입	1,000	1,000	0	0	0	0	0	0	0	0	0	0	0	0	0	0
기	타	수	입	100,000	50,000	50,000	50,000	0	0	0	0	0	0	0	0	0	0	0	0

회계연도 : 2024년
 예산차수 : 기금변경2차
 회계구분 : 고향사랑기금

② 수입계획 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수입액	기정액	증감	산출내역
200 세외수입	101,000	51,000	50,000	
210 경상적세외수입	1,000	1,000	0	
216 이자수입	1,000	1,000	0	
216-01 공공예금이자수입	1,000	1,000	0	
220 임시적세외수입	100,000	50,000	50,000	
224 기타수입	100,000	50,000	50,000	
224-03 기부금수입	100,000	50,000	50,000	
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	54,386	71,400	△17,014	
710 보전수입등	54,386	71,400	△17,014	
714 예치금회수	54,386	71,400	△17,014	
714-01 예치금회수	54,386	71,400	△17,014	
수입 합계	155,386	122,400	32,986	
				○고향사랑기부금 기정 50,000,000원 = 50,000 ○예치금 회수 54,386,440원 - 기정 71,400,000원 = △17,014

3.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

회계연도 : 2024년
 예산차수 : 기금변경2차
 회계구분 : 고향사랑기금

(단위:천원)

연도별	조 성 액						집 행 액						잔액 (㉑-㉒)			
	계 ㉑	전입금	보조금	차입금	융자금회수 (이자포함)	예수금	이자수입	기타수입	계 ㉒	비용자선 사업비	용자성 사업비	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		차입금상환	예수금 리금상환	기타지출
2018년 까지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
2019년도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
2020년도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
2021년도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
2022년도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
2023년도	54,386	35,610	0	0	0	0	114	18,662	0	0	0	0	0	0	0	54,386
2024년도	101,000	0	0	0	0	0	1,000	100,000	0	0	0	0	0	0	0	101,000
계	155,386	35,610	0	0	0	0	1,114	118,662	0	0	0	0	0	0	0	155,386

4.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

회계연도 : 2024년
 예산차수 : 기금변경2차
 회계구분 : 고향사랑기금

(단위:천원)

구분	예치(탁)처	예치 및 예탁액			비고
		2022년도 말 현재액	2023년도 말 현재액 ㉔	2024년도 말 현재액 ㉕	
합계		0	54,386	155,386	101,000
예치금	소계	0	54,386	155,386	101,000
	농협은행	0	54,386	155,386	101,000

□ 「**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**」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□ 「**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**」

제11조(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·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(이하 “고향사랑기금”이라 한다)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, 제3항에 따라 모집·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.

1.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·보호
2. 지역 주민의 문화·예술·보건 등의 증진
3. 시민참여,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
4.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

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(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)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.
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·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**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**」

제22조(기금 운용계획의 수립)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2.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3.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